

보도자료

2016. 10. 24.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02-3480-1386)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마련

◆ 경과

[1] 2016. 7.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 개최

- ▶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6명의 법관들이 모여 위자료 산정실무의 현실화에 관하여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최초의 자리
- ▶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논의 요지

-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르므로 그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야 함
- 불법행위 유형을 ① 일반 교통사고, ② 대형 재난사고, ③ 소비자·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④ 인격권 침해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위자료 산정방식 :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설정하되,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가중하고, 다시 일반 증액 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가중) 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증액·감액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2] 2016. 8. 대전지방법원 중심,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10여명 연구반 구성

▶ 심화 연구 대상

- 불법행위 유형 선택
-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특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된 기준금액
- 특별 가중사유, 일반 증액사유 및 일반 감액사유의 선정

▶ 연구방법

- 국내외 판례 분석, 소속 법관들 상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검증

[3] 2016. 9. 대외적 의견수렴 절차 진행

▶ 2016. 9. 26.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4차 회의 논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발표된 초안 소개
- 대한변호사협회, 기존의 위자료 인정액이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위자료 인정액이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발표된 위자료의 단계적 산정방안이 마련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수준의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찬성 의견 제시

- [참조] 2016. 9. 30.자 대법원 보도자료

◆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1] 개관

- ▶ 2016. 10. 20. 사법연수원 주최
- ▶ 전국 법원을 대표하여 44명의 법관들이 참석
- ▶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들이 심화검토 결과를 발제하고, 참석 법관들의 조별 토론을 거쳐 논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안 마련

[2] 주요 내용

- ▶ 불법행위 중 ① 교통사고, ② 대형 재난사고, ③ 영리적 불법행위, ④ 명예 훼손 등 4개 유형 선정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④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한정함

- ▶ 위자료 산정방식 ☞ 3단계 산정방안 채택

-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 요건』 및 『기준금액』을 달리 정함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과 달리 ④ 유형에서도 기준금액을 마련함

- 불법행위 유형별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2배 가중

-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특별가중) 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증액·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

- ▶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핵심 요지

① 교통사고

-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이하 '사망시'로만 기재), 기준금액 1억 원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 2억 원을 가중된 기준금액으로 적용

② 대형 재난사고

-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시 기준금액 2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4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 ☞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 ☞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③ 영리적 불법행위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준금액 3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시 6억 원으로 기준금액 가중

-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 ☞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 ☞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 ☞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④ 명예훼손

- 고의·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신용훼손 시, 「일반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5,000만 원, 「중대피해」의 경우 기준금액 1억 원
- 다음과 같은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배 가중된 기준금액 적용

- ☞ 허위사실인 경우
- ☞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 ☞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 일반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단, 아래의 '중대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대피해 ☞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 또는 현저히 저하된 경우
- ☞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유형 불법행위에서,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신용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가중범위(2배)를 초과하여 가중할 수 있음

※ ①~④ 유형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 또는 일반 감액사유가 존재할 경우, 5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요컨대, 특별 가중사유의 존재 및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하여 ① 교통사고의 경우 3억 원, ②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6억 원, ③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9억 원까지 위자료로 인정 가능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

[3] 향후 계획

- ▶ 2016. 10. 24.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을 알림
- ▶ 적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시 반영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 2016년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담은 해설서가 발간되어 법관들에게 배포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외부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

[상세자료]

◎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및 특별가중 금액 제시

불법행위 유형		기준금액	특별가중	
교통사고		1억 원	2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4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6억 원	
명예훼손	일반피해	0.5억 원	1억 원	※ 가중사유 중첩 시 초과 가능
	중대피해	1억 원	2억 원	

▪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또는 특별가중 금액을 50% 범위에서 증액·감액 조정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극히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

◎ 단계적 산정방안 이해

단계	구분	내용
1	적용대상 및 기준금액의 설정	• 유형별 적용대상과 기준금액 제시
2	기준금액의 특별가중	•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 가중
3	구체적·개별적 참작사유의 반영	• 일반 증액사유 및 감액사유를 반영하여 $\pm 1/2$ 범위에서 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감액 가능

◎ 불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마련 배경

[1]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가해자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에 이른 경우,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2] 대형 재난사고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게 처참한 결과가 발생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신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며,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국가·사회적 신뢰 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3] 영리적 불법행위

사업자가 영리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 또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인간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도외시하였고, 사회 일반에 생활필수품 등 재화와 용역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무해성 등에 관한 불신과 공포·불안을 야기하였으며, 사업의 규모와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저버렸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예방과 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유를 반영하여 적절한 위자료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4]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피해자가 기존의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 등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에 못지않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재발에 대한 억제 및 예방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